

제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

검 토 보 고 서



2022. 3. 2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

검 토 보 고 서

2022년 3월 22일
전문위원 허 은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26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3월 12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3월 15일

2. 제안이유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의 조합 및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개요

시장명	시설명	소재지	규모(㎡)	수탁체	위탁기간
남부골목	고객지원센터	등촌로5길 62-4 (화곡4동)	213.56 (64.72평)	서울화곡동 남부시장사업 협동조합	2017. 4. 16.
	고객주차장	곰달래로55길 4, 곰달래로251	750 (227평)		~ 2022. 4. 15.

시장명	시설명	소재지	규모(m ²)	수탁체	위탁기간
까치산	고객지원센터	강서로12길 14 (화곡8동)	302.23 (91.24평)	까치산시장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2017. 4. 16. ~ 2022. 4. 15.
	고객주차장		186.18 (56평)		
송화벽화	고객지원센터	강서로 263-29 (발산1동)	151.73 (45.90평)	송화벽화시장 상점가협동조합	2017. 4. 16. ~ 2022. 4. 15.
	고객주차장		661.98 (200평)		
방신	고객주차장 (노상)	방화동 578-8 (방화1동)	100 (30평)	방신전통시장 상인회	2017. 7. 1. ~ 2022. 6. 30.

○ 위탁사무내용

-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등

○ 위탁기간: 5년

- 남부골목·까치산·송화벽화 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2022. 4. 16. ~ 2027. 4. 15.)
- 방신전통시장 고객주차장(노상)
(2022. 7. 1. ~ 2027. 6. 30.)

○ 수탁자 선정방식: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0호) 제22조
-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의 조합 및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인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 ‘적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운영사무는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상거래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 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 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히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0호)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